대한공중인협회 주요 회무

 $(2017. 1. 1. \sim 2017. 12. 31.)$

공중업무 질의 · 회신

- 집행문수통부여 불가 고수에 관한 시정명 령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 □ 질의 내용(요지)

집행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가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거부하므로 이에 대하여 협회의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 회신 내용

집행문 부여는 오로지 집행증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 협회는 그 시정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거부가 부당한 경우그 불복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 신청 외에 공증인법 제81에 따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펀드가 촉탁인 경우의 위임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 질의 내용(원문)

주식회사 주주 중 일부가 펀드인 경우가 있는데, 그 펀드 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로부터 촉탁 및위임을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상법상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촉탁 및 위임의 주체가 누구 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펀드가 상법상 회사가 아닐 때 ①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은 경우가 있고, ② 세무서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연인 또는 법인의 모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을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여 펀드로부터촉탁 및 위임을 받고 펀드 대표자의인감증명서를 날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구성원 모두의 촉탁 및 위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법무법인 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주주 중 일부가 펀드이며, 그 펀드가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에 촉탁 및 위임 방법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 르면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 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 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 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 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제6 조 제5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 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구를 '집 합투자기구'라 한다. 이른바 '펀 드' 란 이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2.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집합 투자기구에는 ① 투자신탁, ② 회 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 조합형 태의 집합투자기구 등 세 가지 형

- 태가 있다.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 구로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이 인정되어 있고,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는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인정되어 있다. 자 본시장법에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 의 집합투자기구가 열거되어 있으 나 실제로는 '투자신탁'과 '투자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거의 대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투자 신탁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는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인 반면, 투자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이 있는 회사형 집합투자기 구이다.
- 3. 본건 질의는 투자회사처럼 법인격 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형태인 투자신탁에 있어서 누구를 촉탁인으로 보아 인증절차를 진행 할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투자신탁은 별도로 법인격 을 형성하지 않으며 투자자와 집합 투자업자 사이에 계약(신탁법 제2 조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성립한 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고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권리를 가 지만, 투자자금에 관한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못한다.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의 자금운용업무를 수행 하며 투자대상자산인 지분증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다. 따라서 투 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주 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주주는 법인격이 없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수탁 자인 집합투자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1항은 집합 투자업자가 의결권행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및 투자합자조합)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결론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 명조합 형식의 집합투자기구가 주 주명부상 주주로 표시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 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업자들은 자신이 취 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외부적 거 래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인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집합투자기구 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주총 회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위 인감이 해당 '투자신탁'의 인감 또 는 해당 '투자익명조합'의 업무집 행조합원의 인감이 분명하다는 취 지의 서면과 집합투자업자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공증실무상 법인의 촉탁여부를 심 사할 때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제출되더라도 사용인감 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 는 것처럼, 위임장에 집합투자업자 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집합투자기 구의 별도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의 법인인 감증명서가 제출되고 위 별도의 인 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이 통상의 사용인감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 성되어 제출된다면 적법한 촉탁으 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주주명부에 집합투자기구가 주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집합투자업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 태라면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대리 인에게 주주명부 상에 집합투자업 자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보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의 기재 만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어느 집합투자업자에게 속해 있는지 불 분명하다면 고유번호증(집합투자 기구는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독자 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 적임) 등을 제출받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 신

□ 질의 내용(원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상의 채권자가 사망함에 따라 위 채권을 상속인인 처와 자녀 2명이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상속인 중 2명(처, 자녀 1명)만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바, 이러한 경우 집행문 부여가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나머지 1명으로부터 다시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을 경우 받아야 할 서류와 부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예문〉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의 승계 인 △△△(주민등록번호, 금 원), 같 은 □□□(주민등록번호, 금 원)에게 이 집행문을 부여한다.

□ 회신 내용

-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상의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당연히 가 분채권입니다. 가분채권에 관한 공 동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이견이 있 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분할채권관계 가 성립하여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 에 따라 분할된다고 하는 것이 판 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 에 있어서 상속인 중 2명만 승계집 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면 신청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각각 비 율 또는 금액을 밝혀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나머 지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 청한다면, 그 때 그 상속분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면 됩니다.
- 2. 위 사안에서 상속인 중 2명이 처음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상속 의 원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후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관하여 승 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다시 상속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 다.
- 승계집행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명의 신청인에게 하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도 있고,

각 신청인마다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명의 신청인에게 하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면 신청인들이 하나의 집행문에 의해 권리행사가 서로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신청인에게 하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증서 년 제 호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망 ○○의 승계인 ○
 ○○(주민등록번호)에게는 이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권금액의 ○분의 ○에 대하여, 같은 승계인 ○○○(주민등록번호)에게는 이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권금액의 ○분의 ○에 대하여, 같은 승계인 ○○○(주민등록번호)에게는 이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권금액의 ○분의 ○에 대하여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 신청인마다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중서 년 제 호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망 ○○○의 승계인 ○ ○○(주민등록번호)에게 이 공 정증서 정본 표시 채권금액의 ○분의 ○에 대하여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도록 되어 있고, 보통 금액이나 비율로 기배하여 장이는 판결의 경우와 달리 원금, 이자 및지연손해금의 근거규정이 각각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으로기재하는 것보다 비율로 정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④ 공정증서 원본 열람 관련 질의에 대한 회 신

□ 질의 내용(원문)

당 공증사무소 작성 공정증서 원본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일방인 채무자가 소송 중인 사건의 공정증서 원본상의 채무자 본인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채무자의 요청을 인정하여 당 공증사무소에 보관중인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요구하는바, 공증인법 제43조에 의한 공정증서 원본 열람에 관한 규정이 채무자에게 적용됨은 당

연하지만 채무자가 대동한 필적 감정 사에게도 함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므로 문의하오니 답변바 랍니다.

□ 회신 내용

- 1. 공증인은 촉탁인의 동의를 받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타인에 게 제공할 수 있으며(공증인법 제5 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업무 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 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149조) 등에 비 추어 보면, 공증인법 제43조가 증 서원본의 열람을 촉탁인, 그 승계 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 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 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자에게는 절대 증서의 내용 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증서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촉탁인 등 위 열 람권자에게 그 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나아가 공증인도 진실발견에 협조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은 조리상 명 백하므로 촉탁인이 동의하지 않거 나 중서 원본의 외부반출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정당한 절

- 차에 따라 진행되는 문서감정에 협 조할 필요가 있다.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촉탁인인 채무자가 법원의 문서감정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이 선정한 필적감정사를 대동하여 증서원본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대동한 그 필적감정사에게 증서원본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공증인법 제43조에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협회 주요 활동

집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국회 법사위에 제시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 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 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 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정부(법무부)가 2017. 1. 31. 국회에 제출한 공증인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2)과 관련하여, 협회는 동 개정안 중 화 상공증에 대하여, 상당수 회원들은 신원확인이나 촉탁 의사 확인에 한 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 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 상공증 제도를 도입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제도를 도입할 지라도 신원확인 방법에 일정한 제 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 견과 함께 공증관련 알선행위의 벌 금형에 관한 법정형 2천만 원 이하 규정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도 변호 사법의 경우와 같이 최소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다음은 협회가 2017. 2.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했던 공증 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협회 측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 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5332 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 진하오니 동 개정법률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증인법 제66조의2 관련

현행 제66조의2 제2항은 의사록을 이른바 참석인증을 할 때 공증인이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는지와 청문인증을 할 때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참석인증에서도 공증인이 의사록의 서명 또는기명날인을 확인한다는 점을 분명히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의사록의 서명 또는기명날인을확인하는 방법은 사서증서에 대하여인증할때의 방법과 똑같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증인이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한다고 규 정할 뿐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 안 논의 과정에서는 의사록 인증도 사 서증서의 인증으로서의 성질도 있다 는 전제 아래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에 관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을 의사 록 인증에도 준용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접수된 개 정안에서는 이점이 반영되지 않았는 바 아마도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치며 조문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 생하여 누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66조의2 제5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준용규정의 하나로 공 증인법 제57조 제1항도 들어가야 합 니다. 즉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을 제5항으로 항을 변경함에 그칠 것 이 아니라 그 내용도 제57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공증인법 제66조의5 관련

이른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 상공증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상당수 공증인들은 신원 확인이나 촉탁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화상 공증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 다. 국제 공증업계에서도 화상을 통한 대면을 실제 대면과 동일하게 취급하 는 나라는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할지라도 신원 확인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미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미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등록한 사람을 화상을 통하여 대면하는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초면의 사람을 화상을 통하여 대면하는 경우보다 신원 확인이나 촉탁 의사 확인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공증인법 제87조의2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공증관련 알선행위의 벌금형에 관한 법정형은 2천만 원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관련 알선행위와 비교되는 변호사법에서 벌하고 있는 알선행위는 7년이하의 장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09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벌하고있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는 3년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그러나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보다 공증관련 알선행

위의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관련 알선행위의 벌금형에 관한 법정형은 최소한 "3천만 원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②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에 제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이하 약칭 '연명의료결정 법') 제11조 제1항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 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 도록 정하고자 하는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시행령안이 정한 등록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이 매우 실망스럽고, 의향서 작성에 있어서 는 그 진정성립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해 별다른 대비 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향서 작 성 단계에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인력의 수준을 변호사 자격 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증 제도를 의향서 작성과정에서 활용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에 제출함.

□ 다음은 협회가 2017. 4. 26. 보건 복지부에 제시했던 약칭 "연명의 료결정법시행령"입법예고에 대한 협회 측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 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대한공증인협회는 2017년 3월 23일 입법예고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이 하 '시행령안'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 시행령안 제8조에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함)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등록기관'이라함)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에나와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①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갖춘 사무실,②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스캐너 또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장치,데이터 저

- 장 및 백업시스템, ③ 행정업무를 담당할 상근 인력 1인 이상, 그리고 의향서 작성에 대해 법 제12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고 등록 업무를 담당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교육을 이수한 인력 2인 이상 등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O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등록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격에 맞지 않는 부족한 내용 이라 하겠습니다. 법의 내용에 따 르면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이하 '의향서'라 함)를 작성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이나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등 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 하고, 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 공 및 홍보를 하는 한편 작성자가 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 작성자가 제출한 의향서를 등록, 보관하며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 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성자가 직접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작성자에 대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이 문제가 될 때 의료기관 은 관리기관을 통해 사전에 의향서 가 등록된 바 있는지 조회하게 되

- 는데, 의향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의향서 등록 시 등록기관에 의하여 단 한차례 검증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 O 법의 제정 이전에는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의 향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의 인 증 등을 받아 스스로 보관하는 방 식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통합적 등록시스템은 없 었지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 인이 오랜 법률경력을 통하여 터득 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고도 의 전문성으로 의향서의 작성과정 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이 등록기관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된 인 력의 수준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 만, 예컨대 상담실 하나를 겨우 갖 춘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근무자들 이 의향서의 진정성립에 관해 체계 적 검증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 인력도 아주 단 순한 사안의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향서가 작성되다 보면 그 진정성립이 문제가될 만한 예민한 사안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못한 위 상근 인력이 이 문제에 대처하다 보면 작성자의 의도가왜곡되는 일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 O 더구나 의향서라는 서면의 성격상, 정작 연명의료중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는 의향서만 남아 있을 뿐 그것이 당사자에 의하여 진정하 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 습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의 의사 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면 비전문가에 의한 의사확인이라도 어느 정도 용인될 여지가 있겠지 만, 의향서처럼 단 한차례 확인함 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경우 라면 전문적 법적 식견을 갖춘 공 증인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 니다. 의향서의 작성과 유사한 경 우로는 유언이나 후견계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생전의사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이고, 후견계약은 당사자가 치매 등 심신미약이나 상 실의 상태에 빠짐으로 인하여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증인의 배 석을 필수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 후견계약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 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향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당사자 의사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O 앞서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어지 는 예민한 사안이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법정에서의 쟁송 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등록기관 이 의향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확인한다 하더라도 의향서는 어 디까지 민사소송법상의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 명하여야 하며 사문서에 본인의 서 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 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향서 상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더라 도 그것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은 필적이나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 복 잡한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 니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공증인에 의하여 의향서가 공정증서 또는 인 증서로 작성되면 이는 공문서로 취 급되며(대법원 1992, 10, 13, 선 고 92도1064 판결),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됩니다.

- 즉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의향서는 재판상 진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의향서는 진정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법은 유언이나 후견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O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시 행령안이 정한 등록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은 실망 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향서 작성 과 관련된 등록기관의 역할을 지극 히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였고, 의 향서 작성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관 하여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의향서 작성의 단계에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인력 의 수준을 변호사 자격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가 있고, 나아가 기왕에 존재하는 편리하고 저렴한(공증인수수료규 칙 제15조 제1항, 제20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인증수수료 는 12,500원입니다.) 수단인 공증 제도를 의향서 작성과정에서 활용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③ 양육비이행계약공정증서 서식 관련 의견 법무부에 제시

□ 2015. 6. △△인가공증인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 관리원과 협의하여 '양육비이행계 약공정증서'라는 서식을 작성, 법 무부에 신고하였고, 법무부는 동 서식의 신고를 2015. 8.에 수리한 바 있으나, 그 후 양육비이행관리 원은 동 신고서식이 전국의 각 공 증사무소에 배포되어 있지 않아 신 고서식 양식에 따른 공증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법무부가 이를 각 공 증사무소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 자, 법무부는 동 서식의 필요성 여 부 및 만약 필요하다면 공증 사무 소에 대한 서식 배포 또는 법무부 차원의 표준안 마련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협회 의견을 물었는바, 협회는 양육비 서식은 채무변제 서식을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 수준의 서식례라고 보여진다면서, 제3조 최우선변제 조항을 제외하면 채무 변제 서식과 차별이 된다고 볼 만 한 점이 없고 오히려 제3조의 내용 은 일반적인 서식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이며, 제2조 변제 기한과 방법 규정은 일시금 지급방 식에 따른 기재례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육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 기금 채무 지급 형태가 통례라는 면에서 표준서식으로는 부적절하 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

무부에 제출함.

□ 다음은 협회가 2017. 8. 21. 법무 부에 제시했던 "양육비이행계약공 정증서 서식"에 대한 협회 측 의 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 귀 부의 의견요청 공문에 첨부된 '양육비이행계약공정증서'서식 (이하 '양육비 서식'이라 함)의 조 항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증서식 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서식 중 제 26-1호 및 제26-2호의 '채무변 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서식(이하 '채무변제 서식'이라 함)과 매우 유사합니다.
- 우선 양육비 서식 제1조(목적)는 "양육비 채무자 □□□는 20 년 월 일에 금 000원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로 부담할 것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양육비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공증인들은 위 채무변제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촉탁인들 사이에 발생한다양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요약한다음 그 채무액이 "금 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

- 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1조(목적)를 기재하고 있는 데, 양육비 서식의 제1조는 그 점 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 정증서의 전형적인 작성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그 외에 양육비 서식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6조(지연손해금),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8조(위와 같다) 및 제9조(강제집행의인낙)는 채무변제 서식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양육비 채권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바꾼데 불과하며, 양육비 서식 제5조(변제의 장소)에서 양육비 채권자의 은행계좌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도, 보통 공증인들이 채무변제 서식의 제4조를 변용하여 흔히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 양육비 서식의 조항 중 가장 특징 적인 부분은 "양육비 채무자는 양 육비 채권자와 사이에 출생한 미성 년자 자녀의 최저 생계비와 교육비 를 담당하기 위한 채권으로 모든 채권에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양 육비 채무자는 본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제179조와 제180조 ①, ②항을 적 용한다."고 되어 있는 제3조(최우 선변제)입니다. 하지만 민법의 일 반적 규정이나 양육비이행확보및

지원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육비에 관하여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식에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촉탁인들에게도 양육비에 관하여 일반적인 우선변제가인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 O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179조 제1항 제14호에서 채무자 의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를 공익 채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비채권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 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일반적인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기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O 이처럼 양육비 서식은 채무변제 서식을 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 수준의 서식례라고 보여집니다. 제3조를 제외하면 채무변제 서식과 차별이 된다고 볼만한 점이 없고 오히려 제3조의 내용은 일반적인 서식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 제2조의 경우 일시금 지급방식에 따른기재례를 사용하고 있는바, 양육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금 채무지급 형태가 통례라는 면에서 표준서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O 이런 점에서 이를 전국 공증사무소 에 양육비 서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양육비 서식을 전국 공증사무 소에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면, 일시금 지급 형태뿐만 아니라 정기금 채무 지급 형태의 기재례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 서류보관 방법 안 내

□ 「공증인법」제57조(인증 방법)제4 항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에 는 반드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 2, 6, 개정), 최근 그 보관 서류를 사본이 아닌 공증사무소 보 존용 인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 관해오다 공증서류 검열 과정에서 지적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바, 동 서류보관 방법과 관 련하여서는 법무부가 전자공증시 스템(enotary.moj.go.kr)의 2015. 6. 29.자 내부공지 및 2016 년도『공증과신뢰』통권 제9호 288페이지 법무부 지시사항 및 유 권해석으로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 서류보관 방법"을 안내한 바 있 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2017, 10, 24, 협회 차원에

서 재차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 서 류보관 방법 절차를 안내함.

□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 서류보관 방법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대하여 공증서 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등으로 인증을 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표지를 제조한 후, 촉탁인에게 인증서류를 교 부하기 前 서류일체를 복사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 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증서 사본을 보존하면 족하 며 보존 대상이 되는 인증서 서식에 공증인이 재차 별도 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복사 및 보존의 대상이 되는 인증서는 인증부와의 간인(이 른바 '머릿간인')까지 마무리 된 것을 의미합니다.
- ※ 보존대상 인증서 사본(즉, 복 사가 마무리된 인증서)에 대 하여 재차 간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출처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공지사 항 중 2015. 6. 29자 내부공지

ଗ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경고 통지

□ ◇◇주식회사가 자신들이 작성한 '주식투자계정 수익현황 공문증 서'제하의 사서증서를 △△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 받은 후, ◇◇주 식회사 자사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 공 증사무소' 명칭과 함께 "공식 변호 사 수익률 인증, 운용기간 3개월 간 ○○○% 변호사 인증"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실과 관련하 여, 협회에서는 이 사서증서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증인 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한 것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 인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이같이 광고하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 들을 대상으로 △△ 공증사무소가 마치 그 수익률을 공식적으로 인증 (확인)해 준 것과 같이 기망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임이 명백하므 로. ◇◇주식회사가 향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위법사항을 금지하여 줄 것과 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할 시 에는 관련기관에 의법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2017. 10. 24. ◇◇주식회사에 발 송함.

(6) 협회 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 에 건의

- □ 현행 공중인법상 협회 정회원(임명 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및 준회원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제반 변경 사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신청 시 관련 서류가 1차적으로 협회를 경유하거나 또는 신고・신청 수리 후 협회로의 변경 내용통지 등의 규정 및 실무 시스템이부재하여 협회의 회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협회 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 제출 시 협회 경유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함.
- □ 또한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심사 시 협회 회원으로서의 공증인의 품 위 유지 및 회칙 준수의무를 잘 이 행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만큼 협회 의견을 징구하는 절차 도입 제도의 신설도 함께 건의함
- □ 다음은 협회가 2017. 11. 23. 법무부에 건의한 "협회 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관련 협회 측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1. 제안 이유

1) 정회원 및 준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함) 또는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상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을협회 정회원으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협회 준회원으로규정(법 제77조의3)하고 있으나,정회원 및 준회원 변동 등에 따른법무부장관에 대한 제반 신고·신청시 관련서류가 1차적으로협회를경유하거나 또는신고·신청수리후협회로의변경내용통지등의규정 및실무시스템이부재하여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이에 대한 제도개선이필요함.

2)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심사 과정에 협회 의견 수렴 필요

공증인이라면 누구나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협회는 공증인에 대하여 지도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임명·재인가 신청 시 협회에 의견을 구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현행 회원 관련 규정 실태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최초 임명 또는 인가 시 경유 기관 없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에게 임명 또는 인가신청(법 제11조 및 제15조의 2)하고 있으며, 임명 또는 인가 시 에는 소속지방검찰청과 대한공증 인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및 제1조 의3 제5항).

- 2) 임기 만료 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 무부장관에게 서면 신청하도록 하 고 있으며(시행령 제34조 제1항),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시에는 소속지 방검찰청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 보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34 조 제3항).
 - ※ 재임명·재인가 신청 시 소속 지방검 찰청 검사장은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 부하고 있으나, 협회의 의견은 구하고 있지 않음.
- 3) 준회원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이 있을 때도 같음(법 제 15조의3). 공증인법상 협회 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신고 수리 후에도 협회에 대한 통보 의무 규정은 법령에 없는 상태.
- 4) 지정공증인 지정신청과(법 제66조 의3, 시행령 제38조) 합동사무소 의 설치(시행령 제37조)의 경우는

경유 기관 없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공증인 지정 시에는 소속지방검찰청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시행령 제38조의2), 합동사무소 인가 설치 시 통보 규정은 없는 상태.

3. 개선 방향

1) 주요 골자

①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반 서류 제출 시 협회 경유 의무화

협회 회원 관리 측면에서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시 공증인 대장에 기재된 사항 가령, 사무소 소재지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또 는 공증인의 주소 등에 관한 변동 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이 협회에 통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이 나 실무상 통보되지 않고 있고, 특 히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는 준회원으로서 협회가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행 법규상 법무부의 공증 담당변호사 신고 수리 여부를 협회 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보니.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인가공증 인 회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회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나 구성원에서 탈 퇴한 사람도 준회원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공증인법 및 제반 공증 법령 상 법무부장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신고, 임명, 인가 등의 서류 제출시 반드시 협회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회원 사무소의변동 예정 현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무부에서 협회로의수리 여부 통보가 없거나 지연되고있는 경우라도 협회에서 그에 관한처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되므로 회원 변동 상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개선이 필요함.

② 공중인 재임명·재인가 심사 과정에 협회 의견 징구 절차 도입 추진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심사 시 단순히 징계전력 또는 건강 등만을 검증하고 있으나, 공증인으로서 신의에 따른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를 잃지 않으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공증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등의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가 정한 회비 납부의무 및회칙을 잘 준수하는지 등에 관한 평판 검증도 필요한바, 재임명·재인가 심사 시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안

① 공중인법시행령 제31조 개정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반 서류 제출 시 협회 경유 의무화

현 행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

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개 정 안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

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u>대한공증</u>인협회 협회장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② 공중인법시행령 제34조 개정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심사 과정에 협회 의견 징구 절차 의무화

현 행

제34조(재임명·재인가) ① 임기 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 공증인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만료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 중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34조(재임명·재인가) ① (현행과 동일)

- ② (현행과 동일)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할 때에 법령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장에게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다.

☑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남상우 협회장 제20대 집행부는 취임과 동시에 2017. 4. 6.~24.

- 까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신문사, 대한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 공증제도 관련 현안 논의와 함께 공증직역의 활성화 방안을 협조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 □ 법무부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공증 담당 부서 인사이동 후 2017. 9. 7. 다시 한 번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협회와 법무부 간 실무간담회 구축 및 정 례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 위탁 요청 등 현안에 관한 실질적 협조를 요청하여 일부 성과 를 도출함.

③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출범

- □ 회원 사무소의 공증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법률적, 실무적 의문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통일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공증실무 상시자문단'을 2017. 7. 3.(월) 출 범시킨 후, 매월 평균 약 40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희망 회원이 공증상담위원의 상담용 공개휴대전화번호로 상담문자를 접수하면, 공증상담위원이 문자 접수후 20분이내로 회원 공증실로 전

화를 걸어 1:1 콜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함.

□ 자문 내용 중 선례로서 유의미한 사례는 협회 밴드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법무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상임이사회 또는 협회가 추후 설치예정인 법령해석자문위원회(가칭)의 논의를 거쳐 법무부와 협의 후공문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음.

9 SNS 소통 강화

- □ 협회의 주요 소식을 회원에게 신속 히 전파하고, 협회와 회원 상호간 에 상시적인 친목 도모를 위하여 네이버(주) 자회사가 제공하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일종 인 '대한공증인협회 밴드'를 2017. 6. 14.(수) 공식 개설함.
- □ 협회 밴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들에게 밴드초대링크 문자를 발송하여 가입할수 있는 비공개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게시물로는 협회의 주요공지사항을 비롯하여 회원동정, 공증실무 Q&A, 공증실무질의, 공증법령 개정 사항, 제도개선 건의(신문고)등 다양한 주제가 게시되고있음.

100 공증실무제요 발간 TF 출범

- □ 법원 재판 실무에서 사용 중인「법 원실무제요」와 같이 실제 공증 사 례를 포함한 공증 종류별 각론 형 태의「공증실무제요」 발간 T/F 2017. 8. 출범시킴.
- □「공증실무제요」발간 T/F는 집필 위원 6인, 검토위원 3인 등 총 9인 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2019 년 중에 46배판(또는 국배판) 기 준 약 1,0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 을 추진중에 있음.

11 제1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 □ 협회와 회원의 공증업무 처리 고충 과 실무적 애로사항을 직접 회원들 을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권역별 회원 간담회를 추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내 서울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회원을 대 상으로 2017. 7. 21.(금)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임원과 참여 회원 간 공증제도 발전을 위 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 간담회 권역은 지역별 회원 수 대 비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분 함.

12 제11회 공증주간 설정 및 공증인 보조자 교육 시행

-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공 증제도가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 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며, 약속이 지켜 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 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7. 9. 18.(월)~22.(금)까지를 "제11 회 공증주간"으로 설정함.
- □ 제11회 공증주간 행사는 제3회 공 증주간 때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 배포 등 일체의 대내외 행사를 시 행하지 않음.
- □ 다만, 제11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7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을 2017. 9. 20.(수) 14:00~18:00까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2층 대강당에서, ① 전자접 수부 운영방법, ② 공증감사 지적사항 설명, ③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 내용 설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 교육에 전국 총 216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보조자 221명(각 사무소별 1명. 단, 1

개소는 3명, 3개소는 2명씩 참석) 이 참석.

② 2017년도 『공증과신뢰(구, 대한공증협회 지』(통권 제10호) 발간

□ 협회 기관지 『공증과신뢰』 2017년 도 통권 제10호 시론으로 "대한공 증인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남상우 협회장)"을, 특집에 사서 증서 인증의 몇 가지 문제(박상진 공증인) △ 동산 양도담보부 공증 에 관한 고찰(김재수 공증인)를, 논단으로 △ 유언 공증에 관한 고찰 (박중욱 공증인), △ 어음공증 실 무자를 위한 약속어음법 해설(이 상석 감사)을, 수필에 △ 찍새와 딱 새(김길찬 공증인), 국제교류로 △ 제7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 위원회(CAAs) 참가보고서(박형 연 총무이사) 등의 원고와 함께 공 증인 사무직원 연수교육 자료(공 증실무상시자문단 상담내용 해설). 공증업무 질의·회신, 협회 주요 회무 등을 게재, 2017. 11. 1. 총 1,100부를 발간, 회원 및 법원·검 찰 · 변호사회 · 국공립도서관 · 유 관기관 등에 배포.

2017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17. 1. 6. : 2016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17. 1. 23. :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일반인 민원(시 정명령요청) 관련 논의 ② 2017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③ 2016년도 일반 회계·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및 2017 년도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예산 (안) 논의 ④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 회 개최(안) 승인 및 임원 등 선출절차 논의 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논 의 ⑥ 201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 2017. 1. 26. : 일반인 민원(집행문수통부여 불가 고수에 관한 시정 명령 요청) 회신
- 2017. 1. 31. : 대한공증인협회 2017년도 협회 장 등 임원 및 대의원(각 임기 3년) 선출후보 자 등록신청 안내 / 회원
- 2017. 1. 31. : 대표 변호사 및 공증담당변호 사 현황, 공증실 연락처 등 최신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인가공증인 회원
- 2017. 2. 13.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5332호) 관련 의견 제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7. 3. 6. :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 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7년도 사업 계획 승인 (원안 의결) ② 2016년도 일 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의결) ③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원안 의결) ④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동의 (원안 의결) ⑤ 2017년도 대의원 정기 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⑥ 정기총회 의안 중 신임 대의원(명예직, 무보수) 선출절차 의결 (원안 의결) ⑦ 정기 총회 의안 중 신임 감사(명예직, 무보수) 선출절차 의결 (합의 의결) ⑧ 정기 총회 의안 중 신임 협회장 · 부협회장 (명예직, 무보수) 선출절차 의결 (합의 의결) ⑧ 정기 총회 의안 중 신임 협회장 · 부협회장 (명예직, 무보수) 선출절차 의결 (합의 의결)
- 2017. 3. 9. : 대한공증인협회 2017년도 협회 장 등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등록 입후보 자 공고 / 회원
- 2017. 3. 9. : 대한공증인협회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총회 대의원 및 법무부
- 2017. 3. 13. :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경선 기본 원칙 결정 ② 부재자사전투표 방법 및 일정 결정 ③ 선거운동 결정 ④ 총회에서의 투표 절차 결정 ⑤ 무효 및 유효투표 기준 결정 ⑥ 부협회장 동반 입후보자

가 현 대의원인 경우 투표권에 대한 검토

- 2017. 3. 14. :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① 경선 기일 연기 제안 논의 ② 선거운동 중 대의원 사 무소 방문 허용 재고 요청 논의 ③ 부 협회장 동반 입후보자가 현 대의원인 경우 투표권 관련 재고 요청 논의 ④ 위임장 및 부재자사전투표 회신용 봉 투 개함 관련 논의 ⑤ 총회 의장 및 부 의장의 총회 출석확인서 관련 논의
- 2017. 3. 15. : 협회장 선출 입후보자별 소견 서 안내 / 총회 대의원
- 2017. 3. 16. : 제2차 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의결사항 없음
- 2017. 3. 17. : 협회장 경선 후보자 사퇴 공고 / 회원 및 총회 대의원
- 2017. 3. 20.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는의 및 의결사항: ①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자문 ② 정기총회의안 중 제3호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승인안 관련 자문 ③ 정기총회의안 중 제4호 총회 대의원 선출안 관련 자문 ④ 정기총회의안 중 제5호 감사 선출안 관련 자문 ⑤ 정기총회의안 중제6호 임원 중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출안 관련 자문

- 2017. 3. 28. :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 최
 - ▶논의 및 의결사항: ①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의결) ②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 (원안의결)③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원안의결)⑤ 일)④ 총회 대의원 선출 (원안의결)⑤ 임원 중 감사 선출 ⑥ 임원 중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출 ⑦ 임원 중 상임이 사 및 이사 선임

▶신임 협회장

□ **남 상 우**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신임 부협회장(총 5명)

- □ 최 영 룡 [법무법인(유한) 한별] / 수석]
- □ 이 춘 희 [법무법인 삼일]
- □ 박 종 순 [법무법인 한미]
- □ 홍 순 기 [법무법인 한중]
- □ 김 종 선 [법무법인 부일]

▶신임 상임이사(총 6명)

- □ 박 형 연 [법무법인 코러스]
- □ 한 정 화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 김 철 기 [법무법인 한미]
- □ 이 승호 [법무법인(유한) 한별]
- □ **문 정 환** [공증인 문정환 사무소]
- □ 김 승 훈 [법무법인(유한) 화우]

▶신임 이사(총 46명)

- □ **이 경 우** [법무법인 한결]
- □ 여 상 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 **양 종 관** [법무법인(유한) 한길]
- □ 안 철 현 [법무법인 로투스]

□ 이 홍 우 [법무법인 대성]	□ 김 영 찬 [공증인 김영찬 사무소]
□ 김 승 열 [법무법인 양헌]	□ 신 용 국 [공증인가 부산합동]
□ 한 택 근 [법무법인 양재]	□ 신 면 주 [법무법인 원율]
□ 양 경 석 [법무법인 신세기]	□ 백 경 석 [창원 법무법인]
□ 박 상 일 [법무법인 충정]	□ 방 영 철 [법무법인 광주로펌]
□ 조 범 제 [법무법인 천우]	□ 양 차 권 [법무법인 서석]
□ 이 용 철 [공증인 이용철 사무소]	□ 고 재 욱 [법무법인 남도]
□ 정 영 원 [법무법인 한울]	□ 김 영 곤 [법무법인 호남종합]
□ 윤 찬 열 [법무법인 다우]	□ 김 영[법무법인 백제]
□ 유 경 현 [법무법인 강서]	□ 고 성 효 [법무법인 탐라]
□ 심 장 수 [법무법인 북부합동]	▶신임 감사(총 3명)
□ 김 영 범 [공증인 김영범 사무소]	□ 유 정 주 [공증인 서부합동 사무소]
□ 이 성 재 [법무법인 로직]	□ 김 진 섭 [법무법인 서울제일]
□ 이 병 렬 [공증인 이병렬 사무소]	□ 이 상 석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장 운 기 [법무법인 가인]	▶신임 운영위원(총 7명)
□ 이 병 호 [법무법인 해동]	□ 강 수 림 [성심종합 법무법인]
□ 박성 규 [법무법인 다비다]	□ 김 양 남 [공증인가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 홍 경 호 [모란 법무법인]	□ 노 승 행 [법무법인 두레]
□ 윤 기 원 [법무법인 대현]	□ 송 정 호 [법무법인 한중]
□ 윤 중 현 [법무법인 해마루]	□ 심 일 동 [공증인 서부합동 사무소]
□ 김 재 수 [공증인 김재수 사무소]	□ 유 원 규 [법무법인 광장]
□ 지 범 주 [법무법인 효원]	□ 이 태 운 [법무법인(유한) 원]
□ 김 수 섭 [법무법인 나라]	▶신임 총회 대의원 명단(총 77개소)
□ 안 경 재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	• 서울중앙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3개소)
□ 유 재 복 [법무법인 대전합동]	공증인 김형민
□ 조 광 묵 [법무법인 청암]	공증인 경향합동 법률사무소
□ 박 종 웅 [서원 법무법인]	공증인가 소공합동 법률사무소
□ 백 수 일 [영남 법무법인]	법무법인 경원
그김 중기 [법무법인 범어]	법무법인 광장 과성무 버무버의
□ 양 재 환 [공증인 양재환 사무소]	광화문 법무법인 법무법인 길도
□ 김 태 우 [법무법인 국제]	법무법인 대종
□ 김 호 남 [법무법인 우리들]	

동방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봄

법무법인 새한양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송백

법무법인 아시아

법무법인 우원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이데아

법무법인 인화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한강

• 서울동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신문식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법무법인 하나로

• 서울남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 **박중욱**

공증인가 **여의도합동** 법률사무소

남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하림

• 서울북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강성범

법무법인 정성

• 서울서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심일동**

공증인 서호

• 의정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황도연**

법무법인 정언

법무법인 통일

• 인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 **김호영**

공증인가 **주안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명인

법무법인 부천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해

• 수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8개소)

공증인 고제후

공증인 **박상진**

경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다산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진

평택 법무법인

• 춘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박우순**

공증인가 **춘천합동** 법률사무소

• 대전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서도 법무법인

법무법인 홍주

• 청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최용현**

법무법인 청주로

• 대구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팔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법률사무소

• 부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구덕

법무법인 부산동부

법무법인 삼덕

법무법인 신성

• 울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서보석** 법무법인 **태화**

- 창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강처목
 공증인 석진국
 경남 법무법인
- 광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 권혁균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법무법인 법가
- 전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가 전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 제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공증인 현영두
- 2017. 3. 31. :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결과 안내 / 회원
- 2017. 3. 31.: 대한공증인협회 운영위원회 운 영위원 선임 통보 / 운영위원
- 2017. 3. 31. : 대한공증인협회 총회 대의원 선출 통보 / 총회 대의원
- 2017. 3. 31.: 대한공증인협회 2017년도 임원 중 부협회장(감사, 상임이사, 이사) 선출(선 임) 통보/임원
- 2017. 4. 3.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장 신임 인 사차 유관기관 예방 및 언론 인터뷰

추진 ② 가칭 '공증인정년대책위원 단'구성 ③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시 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협회 의 견 제시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회 성격 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의 전환 논의 ⑤ 공증촉탁비리 고발 건 후속조치 관련 논의 ⑥ 국제공증인협 회 아시아지역위원회 활동 유지 여부 논의 ⑦ 2017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0호 발간 추진 ⑧ 가칭 '권역별(□ □지역) 회원 (고충청취) 간담회'추 진 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 및 홍보 브로슈어 국 · 영문 수정 ⑩ 공증 인 및 보조자 신분증 관련 지침 개정 ① 공증 업무 프로그램 개발 관련 논 의

- 2017. 4. 26.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 / 보건 복지부
- 2017. 5. 2. : 공증인징계위원회 및 공증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17. 5. 15.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국제공증인협 회 아시아지역위원회 한국 개최 연도 연기 요청 ②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에 따른 정계청구 피요구자에 대한 공 증인 직무정지 요청 등 후속조치 관련 제안 ③ 공증인정년대책위원단 구성 ④ 공증인보조자신분증 제작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지침 개정 ⑤ 가칭 '공증실무팀' 운영방안 논의 ⑥ 「공증 인 수수료 규칙」 개정에 관한 협회 의 견서(안) 검토 ⑦ 협회 네이버 밴드 (SNS) 개설 및 문자알림서비스 개통 ⑧ 전임 상임 집행부 임원에 대한 패증정 논의 ⑨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회원 회람 ⑩ 확정일자부 인 관련 규칙 개정 검토 ⑪ 사무국 직원 처우 개선 검토

- 2017. 5. 19. : 회원 서비스(SNS 및 문자알림)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 임명공증인 회원
- 2017. 5. 19. : 인가공증인의 공증당당변호사 중 대표자 1인 선정 신고 안내 / 인가공증인 회원
- 2017. 5. 19. : 회원 서비스(SNS 및 문자알림)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안내 / 인가공증인 회원
- 2017. 5. 19. : 유언공증 증인 및 유언집행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양식 안내 / 회원
- 2017. 5. 19. : 공증인보조자 신분증 제식 중 명칭 변경 안내 / 회원
- 2017. 5. 19. : 2017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0호) 게재 원고 모집 / 회원 및 법원행정 처, 학회 등

- 2017. 5. 19. : 공증 법령 준수 촉구 및 위법 행위 혐의 회원에 대한 엄중 조사 강화 안내 /회원
- 2017. 5. 25. : 일반인 민원(징계개시청원진 정서) 이첩 / 법무부
- 2017. 5. 25.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선 사항 의견 수렴 / 회원
- 2017. 6. 2. : 번역문인증 위법행위에 관한 기소처분 등의 후속조치 건의 / 법무부
- 2017. 6. 12.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위 원 중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논 의 및 조사위원 수당 지급 논의 ② 가 칭 "공증실무상시자문단" 구체적 운 영 방안 논의 ③ 일반회계예산 추가경 정예산(안) 편성 논의 ④ 공증실무제 요 발간TF 구성계획안 논의(계속 논 의) ⑤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주최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제7 차 정기회의 참석 여부 논의 ⑥ 공증 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추진 논의(계 속 논의) ⑦ 공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추진 논의(계속 논의) ⑧ 이사 중심의 권역별 회원 간담회 추진 논의(계속 논의) ⑨ 이사회 의사록 인증 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논의 ⑩ 공증인정년대책위원단 활동 관련 일 부 반대 의견 논의 ⑪ 전임 상임 집행

부 임원에 대한 패 증정 재논의 ⑫ 사 무국 직원 채용 논의(계속 논의)

- 2017. 6. 27. : 공증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사 안별 징계 처분 경중에 관한 사례 수집 / 회 원
- 2017. 6. 27. : 협회 네이버 밴드(SNS) 운영 안 내 / 회원
- 2017. 6. 27. : 공증실무상시자문단 운영 안내 / 회원
- 2017. 6. 27.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관련 주의사항 안내 / 회원
- 2017. 6. 27. : 2017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7. 6. 29.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 가소 □□□□ 약정금" 사실조회 회신 / 대 구지방법원 제3민사소액단독
- 2017. 7. 3.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법인 □□ 이 요청한 협회 홈페이지 콘텐츠 사용 협조 요청 논의 ② 조사위원회 위원 중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논의 ③ 제11회 공증주간 설정 및 동 주간 기념 2017년도 공증인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논의 ④ 2017년도 『공증과 신뢰』 통권 제10호 발간 논의 ⑤ 권역

별 회원 간담회 추진 논의 ⑥ 공증실 무제요 발간TF 구성 논의 ⑦ 공증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추진 논의(계속 논의) ⑧ 공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추 진 논의(계속 논의) ⑨ 한국가족법학 회 9월 학술대회 발표자 추천 논의

- 2017.7.6.: 사무실 임대차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사무실 추가 임대 요 청 / 서울지방변호사회
- 2017. 7. 10. : 협회 홈페이지 콘텐츠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법인 □□
- 2017. 7. 11.: 협회 제2기 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촉 통지 / 조사위원
- 2017.7.21.: 제1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개최 / 서울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관내 회원
- 2017. 7. 25. : 임명공증인 현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사본 송부 / 대한변호사협 회
- 2017. 7. 25. : 제20대 집행부 취임 100일 성과 안내 / 법무부장관
- 2017. 8. 7.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위원회 주 요 관할별 거점 공개 조사위원 추가 위촉 ② 공증인이 아닌 자에 의한 광 고행위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여부 논

의 및 의결 ③ 법무부장관의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요청 방안 논 의 ④ 법무부의 양육비이행계약공정 증서 서식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 신 논의 ⑤ 법무부의 전자 접수부 등 시범실시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논의 ⑥ CAAs 위원장 국가 임기 3년 으로 변경 제안 및 UINL 이사 교체 논 의 ⑦ 협회 홍보브로셔 국문판 개정 논의 ⑧ 법무부가 추진중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 관련 논의 ⑨ 제11회 공증주간 기념 2017년도 공증인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논의 ⑩ 제2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 지역 및 시기 논의 (11) 사무국 직원 채용 논의 ② 공증인 및 공증제 도 개선 방안 연구(계속 논의)

- 2017. 8. 10. : CAAs 위원장 국가 임기 1년에 서 3년으로 변경 제안 / CAAs 위원장(인도네 시아공증인협회)
- 2017. 8. 10. : 전자접수부 등 시범실시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부장관
- 2017. 8. 10. : 협회 제2기 조사위원회 위원 위 촉 통지 / 제2기 조사위원회 추가 선임 위원
- 2017. 8. 21. : 양육비이행계약공정증서 서식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법무부장관
- 2017. 8. 24. : 제11회 공증주간 설정 협조 요

청 / 법무부장관

- 2017. 8. 24. : 제11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교육"시행 교육장소 및 강사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
- 2017. 8. 29. : 진정서에 대한 회신 / 민원인
- 2017. 9. 4.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장관의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요청 방안 재논의 ② 부동산 불법전매 과정 에 사용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리베 이트 적발 사건 관련 대응책 검토 ③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④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 항목 금액 변경 승인 ⑤ 회원 청원서 검토 ⑥ 협회 홍보 브로셔 국문판 개정 재 논의 ⑦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인에 공 증인의 선임 참여 방안 논의 ⑧ 공증 실무제요발간TF 집필위원 집필수당 중 자료조사비 사전 지급 논의 ⑨ 사 무국 직원 채용 논의 (10) UINL에서 보 내온 CCNI(국제협력위원회) 및 인권 위원회 설문조사 검토 ① 공증인 및 공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계속 논의)
- 2017. 9. 5. : 제1차 조사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위원장 및 간 사 호선 ② 공증인이 아닌 자에 의한 광고행위 등의 조사사유 해당 여부 및 조사 방법 등 검토 ③ 부동산 불법전

매 과정에 사용된 공정증서 작성 수수 료 리베이트 적발 사건 조사개시 및 조사담당위원 지명

- 2017. 9. 5. : 감독권 일부 위탁요청 및 효율적 인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
- 2017. 9. 6. : 제11회 공증주간 시행 안내 / 회 원
- 2017. 9. 6. ~ 9. :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 시아지역위원회(CAAs) 제7차 정기회의(인 도네시아공증인협회 주최) 참석 / 박형연 총 무이사
- 2017. 9. 18. : 사실조회(서울고등법원 2017나□□□□□□ 계약자지위확인 등) 회신 / 서울고등법원
- 2017. 9. 18. : 수사자료(부동산 불법전매 과 정에 사용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리베이 트 사건 관련) 협조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 2017. 9. 18. ~ 22. : 제11회 공증주간 설정
- 2017. 9. 18. : UINL 2017년도~2019년도 회 기 이사회 이사 교체 후보 추천 / UINL 회장
- 2017. 9. 27.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관련 개선 사항 회원 의견수렴 자료 송부 / 법무부장관
- 2017. 10. 11. : 질의(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회신 / 법무법인 □□

- 2017. 10. 12. : 제2차 조사위원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조사 제2017-1 호 사건 경과보고 및 관련 논의 ② 법 무부 · 협회 합동 집중감사 대상 선정 등 관련
- 2017. 10. 16. :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는의 및 의결사항: ① 법무부·협회합동 집중감사 대상 등 조사위원회건의 관련 논의 ② 공증인이 아닌 자에의한 광고행위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건의 사항 검토③ 공증업무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④ 2017년도 UINL 멕시코 칸쿤 정기총회 참석 여부 논의⑤ 공증실무제요발간TF 집필위원 추가 위촉 및 자료조사비 추가지급 논의⑥ 한국가족법학회와의 학술대회 공동주최에 따른 찬조금 지출논의⑦ 공증인 및 공증제도 개선 방안연구(계속 논의)
- 2017. 10. 20. : 질의(공정증서 원본 열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 2017. 10. 24. : 사서증서 인증절차 후 서류보 관방법 안내 / 회원
- 2017. 10. 24.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 사 변경 신고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인가공 증인 회원

- 2017. 10. 24. : 협회 밴드 초청 및 문자알림 제공을 위한 공증담당변호사 개인정보 수 집, 이용 동의 안내
- 2017. 10. 24. :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위법사 항에 대한 경고 통지 / (주)서울□□□□□
- 2017. 11. 6.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외국인의 공증인 사무직원 채용 가능 여부 논의 ②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규정 적용 배제 방안 논의 ④ 협회 회원 관리 개선 방안 논의 ④ 협회 연회비 부과 기준 논의 ⑤ 협회 입회비 부과 기준 논의 ⑥ 공증인수수료중 장수 매수 추가 수수 관련 논의 ⑦ 법무부와 협회 합동 집중감사 추진 진행 상황 관련 논의 ⑧ 공증인 연수교육 의무 규정 제정 논의 ⑨ 법무부 전자접수부 개선 사항 관련 논의 ⑩ 주주명부등본인증제도 신설 방안 관련논의 ⑪ 공증인 및 공증제도 개선 방안연구(계속 논의)
- 2017. 11. 8. : 2018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 청 안내 / 회원
- 2017. 11. 22. : 고발장 민원 이첩 / 법무부
- 2017. 11. 23. : 협회 회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법무부장관

- 2017. 11. 30. : 전자접수부 개선 협조 요청 / 법무부장관
- 2017. 12. 4. :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회칙 일부개정 회칙안 논의 ② 위원회운영규칙안 논 의 ③ 공증인연수원 설치 · 운영에 관 한 규칙안 논의 ④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논 의 ⑤ 조사위원회규칙안 논의 ⑥ 재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의 ⑦ 법제교 육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논의 ⑧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 수당 인상 및 감사 출석 수당 신설 논 의 ⑨ 2017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 최 논의 ⑩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개 최 논의 (11)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 원 총회 개최 논의 ② 2017년도 『공증 과신뢰』통권 제10호 원고료 책정· 지급 논의 ③ □□ 회원 사무소의 인 증부 분실에 따른 장부 재제공 등 논 의 [4] 주주명부 등본인증제도 및 정관 등본인증제도 신설 방안 관련 논의 (5) 개정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제도 개선 사항 논의 ⑩ 공증실무 등 개선 방안 연구 논의(계속 논의) ⑰ 공증인 및 공 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계속 논의)
- 2017. 12. 6. : 2017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0호 배포(기증, 납본, 제공) / 회원 및 법 무부, 검찰, 국·공립도서관, 법학전문대학 원, 유관기관 등

- 2017. 12. 7. : □□ 회원 사무소 인증부 1권 분실에 따른 재인증 인증부 제공 보고 / 법무 부장관
- 2017. 12. 11. : 2017년도 협회 활동 보고서 (Activity Report) CAAs 제출 / CAAs 위원장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 2017. 12. 12. :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 호) 시행 안내 / 회원
- 2017. 12. 18. : 2018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 증업무 대행청
- 2017. 12. 26. :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① 회칙 일부개정 회칙안 (재)논의 ② 위원회운영규칙 안 (재)논의 ③ 공증인연수원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재)논의 ④ 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재)논의 ⑤ 조사위원회 규칙안 (재)논의 ⑥ 재정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재)논의 ⑦ 12월 임원 수당 금액 조정 ⑧ 공증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논의 ⑨ 사무국 직원 채용 논의 ⑩ 공증인 및 공증제도 개선 방안 연 구(계속 논의)

2017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 입회 현황 ○

(공증인 임명 및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등)

❖ 공중인 김광호 - 소속 춘천지검

· 임명일: 2017.1.2.

· 임 기: 2022. 1. 1.까지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임영로 215-1, 3층 (교동, 강원전산빌딩) (우) 25504

· 전 화: 033-643-8503~4

· 팩 스: 033-643-8505

· 입회일 : 2017. 1. 3.

❖ 공증인 김상호 - 소속 부산지검

· 임명일: 2017. 2. 16.

· 임 기: 2022. 2. 15.까지

· 소재지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2, 1층 (구포동) (우) 46504

· 전 화: 051-303-2302~3

· 팩 스: 051-303-2304

· 입회일: 2017. 3. 29.

❖ 공중인 황순헌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2017. 4. 20.

· 임 기: 2022. 4. 19.까지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78, 1층 (원천동)

(우) 16518

· 전 화: 031-214-5599

· 팩 스: 031-214-5597

· 입회일 : 2017. 4. 24.

❖ 공중인 한만기 - 소속 대전지검

· 임명일: 2017. 5. 30.

· 임 기 : 2022. 5. 29.까지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공림4로 19, 402호 (예천동, 법전빌딩)

(우) 31988

· 전 화:041-663-7000

· 팩 스: 041-663-0037

· 입회일 : 2017. 6. 7.

❖ 공증인 배영철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7. 5. 30.

· 임 기: 2022. 5. 29.까지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3층 (부평동, 대신스카이프라자) (우) 21394

· 전 화: 032-501-8484

· 팩 스: 032-522-8611

· 입회일: 2017. 6. 9.

❖ 공중인 변재범 - 소속 창원지검

· 임명일: 2017.7.10.

· 임 기: 2022. 7. 9.까지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

북1길 3, 2층

(중앙동3가, 동신빌딩)

(우) 51736

· 전 화:055-244-0100

· 팩 스: 055-244-5333

· 입회일 : 2017. 7. 10.

❖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 소속 대전지검

· 인 가 일: 2017.7.10.

· 유효기간 : 2020. 2. 6.까지

· 대 표 : 김영호 · 임창혁 변호사

· 소 재 지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4층 (둔산동, 청남빌딩) (우) 35240

· 전 화:042-472-5050~4

· 팩 스: 042-484-6429

· 입회일 : 2017. 8. 23.

❖ 공증인 이상률 - 소속 서울증앙지검

· 임명일 : 2017. 11. 20.

· 임 기: 2022. 11. 19.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2,304호 (태평로2가, 대영빌딩)

(우) 04526

· 전 화: 02-598-4411

· 팩 스: 02-598-4415

· 입회일 : 2017, 11, 28,

○ 회원 탈회 ○

(공증인 면직 및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등)

❖ 공증인 홍성계

· 소 속: 춘천지검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임영로 215-1,

3층(교동, 강원전산빌딩)

· 탈회일 : 2017. 1. 2.

❖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

・소 속:청주지검

· 대 표 : 윤홍락 변호사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4, 2층(교현동)

· 탈회일: 2017.2.8.

❖ 공중인 권세헌

· 소 속: 인천지검

·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3층 (부평동, 대신스카이프라자)

· 탈회일 : 2017. 3. 23.

❖ 공증인 정차두

· 소 속: 부산지검

· 소재지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2, 1층 (구포동)

· 탈회일: 2017.4.3.

❖ 공증인 김병남

・소 속:수워지검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6층 (인계동, 남현프라자)

· 탈회일 : 2017. 4. 20.

❖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

·소 속:광주지검

· 대 표: 김용채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196번길 14,

212호 (금남로3가, 금남빌딩)

· 탈회일 : 2017. 5. 19.

❖ 공증인 설경진

· 소 속: 대전지검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공림4로 19, 402호 (예천동, 법전빌딩)

· 탈회일 : 2017. 5. 29.

❖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부산지검

· 대 표: 박재봉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203호

(거제동,성신프라이언빌딩)

· 탈회일: 2017.7.3.

❖ 공증인 지명철

·소 속:창원지검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 북1길 3,2층 (중앙동3가,동신빌딩)

· 탈회일 : 2017. 7. 8.

❖ 공증인 김영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서소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4, 4층 (서소문동)

· 탈회일 : 2017. 7. 9.

❖ 공증인 김봉환

·소 속: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세화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15,301호 (무교동, 남강빌딩)

· 탈회일 : 2017. 8. 26.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율촌

·소 속:서울중앙지검

·대 표: 우창록 · 윤세리 · 윤용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13층 (대치동, 섬유센터)

· 탈회일 : 2017. 8. 28.

❖ 공증인 정 영

·소 속:대전지검

·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35, 2층 (둔산동, 청남빌딩)

· 탈회일 : 2017. 8. 31.

❖ 공증인 김수연

·소 속: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안앤김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2,304호 (태평로2가,대영빌딩)

· 탈회일 : 2017. 9. 4.

❖ 공중인가 법무법인 현무

・소 속:수원지검

· 대 표: 김장섭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시흥시 하중로 233, 103호

· 303호 (하중동, 금천프라자)

· 탈회일 : 2017. 10. 24.

❖ 공증인 안동수

·소 속: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안앤리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72,304호 (태평로2가,대영빌딩)

· 탈회일 : 2017. 12. 31.

❖ 공증인 조무희

· 소 속:서울북부지검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8길 17, 2층 (도봉동, 청화빌딩)

· 탈회일 : 2017. 12. 31.

❖ 공중인 신호양

·소 속:수원지검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중앙로 364,2층 (석정동)

· 탈회일 : 2017. 12. 31.

❖ 공증인 강처목

·소 속:창원지검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6-6.4층

(신안동,미성법조타운)

· 탈회일 : 2017. 12. 31.